

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건설  
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8 월 14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25호

붙임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지역 건설산업체를 사용하도록”을 “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 및 활용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
2. 건설용역업의 경우 관내 등록된 건설용역업체
3. 관내 지역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와 현장인력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기적으로”를 “연 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활성화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1. 기본 방향
2. 지역건설산업 경기 현황과 전망
3. 지역 내 생산 및 유통자재와 건설용역업, 장비의 이용률 제고 방안

4.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
5. 제3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력 및 이행 방안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, 기관, 단체,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”를 “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마목) 중 “경험과 경험”을 “경험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2조를 삭제하고,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5조)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, 또한 <u>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지역 건설산업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5조(이행상황 점검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<u>정기적으로</u>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 및 활용하도록 ----- -----.</p> <p>1. <u>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</u></p> <p>2. <u>건설용역업의 경우 관내 등록된 건설용역업체</u></p> <p>3. <u>관내 지역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와 현장인력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이행상황 점검) ----- ----- ----- <u>연 1회 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 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~ 6. (생략)

<신 설>

- 7. (생략)

제5조의2(활성화계획 수립) ① 시

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 
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
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  
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 
야 한다.

- 1. 기본 방향
- 2. 지역건설산업 경기 현황과  
전망
- 3. 지역 내 생산 및 유통자재와  
건설용역업, 장비의 이용률 제  
고 방안
- 4.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 
방안
- 5. 제3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 
따른 노력 및 이행 방안
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시 누  
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 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에  
관한 사항
-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<신 설>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(이하 "위촉위원"이라 한다.)

가. 나. (생략)

다. 지역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

라. (생략)

만.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<신 설>

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, 기관, 단체,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③ -----  
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

가. 나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다. (현행 라목과 같음)

라. -----  
- 경험-----

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.

제12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3조 (생략)

제14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
3.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

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<삭 제>

제12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<삭 제>

제13조(회의) <삭 제>

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6조 (생략)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제>

① ~ ③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제14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
<삭제>